

제266회(정례회) 제3차본회의  
2007년 12월 21일 (금)

## 심사보고서

□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12. 21.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2월 3일  
충청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7년 12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26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7. 12.14)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1. 제안이유

- 우리도 홈페이지 이용 및 도민들의 사이버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사항에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사항  
추가(안 제3조)

- 나.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 또는 도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홍보행사(이벤트)를 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보상 근거 마련(안 제13조)
- 다. 타 기관에서 서비스 중인 교육용 유료 콘텐츠는 당해 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서비스 할 수 있으며 가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 III. 검토보고 요지

(행정자치전문위원 고일준)

- 본 조례안은 도 홈페이지 이용 및 도민들의 사이버 도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홍보행사(이벤트) 참여도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 2007년 12월 21일 개국하여 2008년 1월부터 본격 실시되는 인터넷 수능방송 등 인터넷 방송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됨.
- 다만, 기부행위 등을 정의하고 이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의 내용이 기부행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제112조 제2항 4호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

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붙임 :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2
------------	-----

제출연월일 : 2007년 12월 3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1. 제안이유

- 우리 도 홈페이지 이용과 도민들의 사이버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코자 하는 시책을 조례에 반영코자 기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2. 주요내용

- 인터넷 시스템 구축·운영 사항에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사항 추가 (안 제3조)
-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 또는 도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홍보행사(이벤트)를 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보상 근거 마련(안 제13조)
- 타 기관에서 서비스 중인 교육용 유료 콘텐츠는 당해 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서비스 할 수 있으며 가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 3. 조례안 : 붙 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4호 중 “도”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홍보행사(이벤트)”라 함은 도정참여 및 도정홍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도 홈페이지의 정보검색대회, 퀴즈대회, 사진·동영상 콘테스트, 설문조사, 사용자 제작 콘텐츠 공모전 등 일체의 행사를 말한다.
8. “인터넷 방송”이라 함은 인터넷망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컴퓨터 또는 TV 등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사항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3조(참여마당 운영)** ①도지사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한다.
- ②도지사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 또는 도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홍보행사(이벤트)를 할 수 있다.
- ③도지사는 제2항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인터넷 방송 운영)** ①도지사는 인터넷을 통한 영상 도정보도와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영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방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유료 인터넷 방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타 기관에서 서비스 중인 교육용 유료 콘텐츠는 당해 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서비스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타 기관 교육용 유료 콘텐츠 서비스 가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3.(생 략)</p> <p>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u>도</u>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p> <p>5 - 6(생 략) (신 설)</p>	<p>제2조(정의) ..... .....</p> <p>1. - 3.(현행과 같음) 4..... ..... <u>충청북도(이하</u> <u>"도" 라 한다)..... .....</u></p> <p>5 - 6(현행과 같음) 7. "홍보행사(이벤트)"라 함은 도정참여 및 도정홍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도 홈페이지의 정보검색대회, 퀴즈대회, 사진·동영상 콘테스트, 설문조사, 사용자 제작콘텐츠 공모전 등 일체의 행사를 말한다.</p> <p>8. "인터넷 방송"이라 함은 인터넷망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컴퓨터 또는 TV등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생략)</p> <p>② 인터넷시스템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한다.</p> <p>1 - 6(생 략)</p>	<p>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p> <p>.....</p> <p>1 - 6(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7. (생 략)	<u>7.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사항</u>  <u>8. (현행과 같음)</u>
제13조(참여마당 운영) 도지사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제시 및 교환을 위하여 참 여마당을 운영한다.	제13조(참여마당 운영) ① 도지사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참여 또는 도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 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홍보행사 이벤트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2(인터넷 방송 운영) ① 도지사는 인터넷을 통한 영상 도정보도와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영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방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료 인터넷 방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타 기관에서 서비스 중인 교육 용 유료 콘텐츠는 당해 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서비스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타 기관 교육용 유료 콘텐츠 서비스 가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